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



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I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 · 기을 등 취약 · 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하였음

※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검사: (10년) 1,600수 → (11) 2,000 → (12) 2,700

또한, 금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에 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축산농가 당부사항

- 1. 저수지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 · 의복을 반드시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 2.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등
- 3.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 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등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 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발견시보수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
 - **참고, 그간 우리나라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 ① '03.12.10~'04.3.20(102일간) 발생 / '04.9.21 지위 회복
 - ② '06.11.22~'07.3.6(104일간) 발생 / '07.6.18 지위 회복
 - ③ '08.4.1~5.12(42일간) 발생 / '08.8.15 지위 회복

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시항

-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 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간다.
-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사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 져오지 말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 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야한다.

●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2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가(이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0

축산수첩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 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받을 수 있다.

축산관계자 준수시항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에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ㆍ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지등에게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 축분 뇨를 수집 · 운반하는 자
가축인공수정사 정액등처리업을 등록한 자 및 고용된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 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원 유를 수집 · 운반하는 자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구제역(FMD),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 출처 : OIE

※ 출처 : OIE		
질병	대륙	국가명
구제역 (68개국)	아시아 (30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 아프카니스탄, 오만, 이란, 이스라엘, 인도, 에멘,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터어키,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홍콩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Cambodia,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India, Iran, Israel, Kazakhstan, Korea(Dem. People's Republic), Kuwait, Laos, Lebanon, Malaysia, Mongolia, Myanmar, Nepal, Oman, Pakistan, Palestinian Auton. Territories, Qatar, Saudi Arabia, Sri Lanka,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Vietnam, Yemen
	아프리카 (33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제리아,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베닌, 소말리아, 수단,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케냐, 케메룬, 탄자니아, 토고
		Angola, Bahrain,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Dem. Rep. of the), Cote D'Ivoire, Egypt, Ethiopia, Ghana, Kenya, Libya, Malawi, Mali,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enegal, Somalia, South Africa, Sudan,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유럽 (2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Bulgaria, Russia
	아메리카 (3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주엘라
		Colombia, Ecuador, Venezuela
고병원성조류인플 루엔자 (17개국)	아시아 (13개국)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홍콩
		Bangladesh, Bhutan,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Israel, Japan, Laos, Myanmar, Nepal, Palestinian Auton. Territories, Vietnam ·
	아프리카 (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Egypt, South Africa
	유럽 (1개국)	루마니아
		Romania

